

Experience

주주들도 잘 모르는 간취취득세 “넌 누구니?”

글. 강효민 (내셔널FP 기업컨설팅팀 팀장)

Idea in Brief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과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지분을 만큼 취득하게 된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단,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될 때에는 간취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에도 회사 내에 이러한 세금관련 전문인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3자 지분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대표이사가 800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내고 당황해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생각보다 회사의 주주들이 잘 모르는 간취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은 비상장법인이다. 단, 코스닥상장 법인을 포함한다.

표1. 간취취득세 납부 대상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간취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없음
비상장법인		부담

다음 (표2)를 보면 지분의 이동에 따른 간취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간취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해당 과점주주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7조 5항, 2014년 1월 1일 개정) 즉,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간취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세금에 대해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간취취득세 납세의무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법인소유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차회원권, 콘

표2. 간취취득세 부과 범위

구분	지분비율변동	과세대상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80%	과세 안됨
과점주주 후 지분증가	60% → 65%	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40% → 60%	60% 전체에 대해 과세
주주취입금 출자전환증자	40% → 60%	60% 전체에 대해 과세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40% → 60%	60% 전체에 대해 과세
지분감소 후 지분취득(9년내)	60% → 40% → 55%	과세 안됨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취득(5년내)	60% → 40% → 70%	증가된 10%(70-60%)에 대해 과세
지분감소 후 지분취득(9년후)	80% → 40% → 55%	과세안됨(50% 초과시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

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 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7조 1항) 법인이 소유하면서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를 냈던 물건들은 전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간취취득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간취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해당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이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당연히 과세대상 물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제외된다.

간취취득세의 세율

2%이며,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노각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탕 등), 고급선박 등 중과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된다.

다음 예를 통해서 간단히 간취취득세를 계산해보자!

목기역하지!

1. 주식을 거래 세하는 인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외에도 간취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기본 미흡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물려 세금을 낼 수도 있다.
2. 이미 과점주주인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이동에 대해서는 간취취득세가 없다. 주식이 이동되어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긴 했지만, 주식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취취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기업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특성상 주주들이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취취득세 문제는 없다.

예)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인)
 - * 건물: 4억원
 - * 토지: 5억원
 - * 차량: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 * 2005. 3. 10.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5만주
 - * 2007. 10. 5. 증자후 발행주식 총수: 10만주
- 갑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5. 3. 10. A법인 설립시 2만주 취득(40%)
 - 2007. 10. 5. 증자로 4만주 추가 취득(60%)

앞서 언급한 (표2) 지분율 변동에 따른 과세여부의 3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서 지분율 60%가 되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60% 지분에 대해 간취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취취득세 대상 물건 10억원의 60%가 과세표준이며, 이 과세표준에 2% 세율을 적용하여 간취취득세가 부과된다.

간취취득세 = (10억 × 60%) × 2% = 1200만원